화성시청역 2블록 서희스타힐스 입주자 모집공고

- ■ 본 아파트는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적용됩니다.
- ■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. 05. 31 은 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.
- ■ 해당 주택건설지역(경기도 화성시)은 「주택법」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「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」 별표1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서,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.
- ■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(단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,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).
- ■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■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9. 05. 31)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에 거주(주민등록표등본 기준)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]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
- ■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호의3, 제2호의4에 의거 '세대' 및 '무주택세대구성원'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. "세대"란,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"세대원"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을 말합니다.
  가.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
 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 (예) 부 · 모, 장인 · 장모, 시부 · 시모, 조부 · 조모, 외조부 · 외조모 등
 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 (예) 아들 · 딸, 사위 · 며느리, 손자 · 손녀, 외손자 · 외손녀 등
 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 (예) 전혼자녀 등
  ※ "무주택세대구성원"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.
- ■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보며, 단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.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.
- ■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7의2호, 제23조 제4항,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(이하 "분양권등")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,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(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참조).
  ※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(부칙 제3조)
  -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'입주자모집공고, 관리처분계획(정비사업) 또는 사업계획(지역주택조합)'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, '공급계약 체결일' 기준 주택 소유로 봄 (*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,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).
  - 분양권등 매수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, '매매대금 완납일(실거래 신고서상)'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.
- ■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7의3호에 의거 "소형 · 저가주택등"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,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(선택품목 제외)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.
  ※ "소형 · 저가주택등"이란,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(수도권은 1억3천만원)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(주택가격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 제1호 가목 2)의 기준에 따름)을 말합니다.
- ■ 2009.04.01. 「주택공급에 관한규칙」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(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)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■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※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(www.apt2you.com) 및 국민은행(www.kbstar.com)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[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(www.apt2you.com)에서 운영하는 "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", 국민은행(www.kbstar.com)에서 제공하는 "인터넷 청약신청 안내"를 활용하시기 바람]
- 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·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.
- ■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→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(유주택자도 청약 가능) -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→ 본 주택의 해당순위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, 2순위)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
- ■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.
- ■ 고령자, 장애인, 다자녀가구(단, 미성년자녀 3명 이상)의 최하층 우선배정
 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, 제2호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,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(특별 및 일반공급)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,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)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. 단,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,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(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)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.
- ■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(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).
- ■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,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. 단,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(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).
- ■ 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'주택전시관 방문 신청'에서 '아파트투유(www.apt2you.com) 인터넷 청약 신청'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■ 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,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.
- ■ 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,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- ■ 본 아파트는 2015.04.01.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, 85㎡이하로 "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,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"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「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『추첨제』」가 적용됩니다.
- ■ 주택형 85㎡이하 주택은 2018.09.18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%가 적용됩니다.
- ■ 2017.09.20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,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  ※ 가점제 제한사항 :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(당첨자발표일이 2017.10.18.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)
- ■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. 또한,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※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: 당첨자발표일이 2017.10.18.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
- ■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예 · 부금 포함)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■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,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,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  1.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% : 무주택세대구성원
  2. 나머지 25%의 주택(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) :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(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)
  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: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
  ※ 1주택(분양권등 제외)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,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,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,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  -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,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(다만,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은 경우는 「주택법」 제65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).
- 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6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.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(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)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화성시청역서희스타힐스.com)에 공개되며,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,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■ 2017.09.20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,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.
- 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,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· 호수를 공개한 후 동 ·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,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·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,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.
- ■ 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동 ·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(당첨일)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.
- ■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※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'수도권 및 투기 · 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 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'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■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■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
  -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64조 및 「주택법시행령」 제73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.
  - 재당첨 제한 :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, 당첨 통장은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
  - 본 아파트의 당첨자(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) 및 세대에 속한 자는,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에 접수가 제한됩니다.
  ※ 청약과열지역 : 서울시 · 과천시 · 성남시 · 광명시 / 하남시 · 고양시 · 구리시 · 안양시 동안구 · 남양주시 · 화성시(동탄2) · 세종시 행복중심복합도시 · 광교택지개발지구 / 수원시 팔달구 · 용인시 수지구 · 기흥구 / 부산 해운대구 · 동래구 · 수영구
  ※ 투기과열지역 : 서울시 · 과천시 · 성남시 분당구 · 광명시 · 하남시 · 세종시 행복중심복합도시 · 대구광역시 수성구
- ■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,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- ■ 2018.12.11.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주택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- ■ 본 공동주택은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18.02.09. 시행)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에 대하여 그 실제 거래가격(공동주택 공급가액, 발코니 확장 금액 등 옵션비용)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급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대상입니다(외국인 계약을 포함).
- ■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처벌(「주택법」 제65조 및 제101조)
  -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-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격정지,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
- ■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

구 분	특별공급 (기관추천, 다자녀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)	일반 1순위	일반 2순위	당첨자발표	계약체결
일 정	6월 05일(수)	6월 07일(금)	6월 10일(월)	6월 18일(화)	7월 01일(월) ~ 7월 03일(수)
방 법	인터넷 청약 (08:00 ~ 17:30)	인터넷 청약 (08:00 ~ 17:30)	인터넷 청약 (08:00 ~ 17:30)	개별조회 (www.apt2you.com 로그인 후 조회 가능)	—
장 소	■ 금융결제원(www.apt2you.com) *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*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	■ 금융결제원 (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) - PC : www.apt2you.com - 모바일 : APT2you 앱 ■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- PC : www.kbstar.com - 모바일 : KB스타뱅킹 앱	■ 금융결제원 (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) - PC : www.apt2you.com - 모바일 : APT2you 앱 ■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- PC : www.kbstar.com - 모바일 : KB스타뱅킹 앱	■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(화성시청역 2블록 지역주택조합) 홈페이지 ■ 금융결제원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) - PC : www.apt2you.com - 모바일 : APT2you 앱	견본주택 (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72-17)

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

공급규모 및 공급대상

- 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시 주택과-18806호(2019-05-31)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
- ■ 공급위치 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67-15번지 일원
- ■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 3층, 지상25층, 주 11개동, 총 1,005세대 중 일반공급 265세대[특별공급 112세대(일반[기관추천] 특별공급 26세대,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6세대, 신혼부부 특별공급 53세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세대 포함)] 및 부대복리시설
- ■ 입주시기 : 2022년 09월 예정(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- ■ 공급대상

[단위 : ㎡, 세대]

주택구분	주택관리번호	주택형 (전용면적기준)	약식표기	주택공급면적(㎡)			기타 공용면적 (지하주차장등)	계약면적	세대별 대지지분	총공급 세대수	특별공급 세대수					일반분양 세대수	저층 우선배정 세대수
				주거 전용 면적	주거 공용 면적	소계					기관 추천	다자녀 가구	신혼 부부	노부모부양	계		
민영주택	2019000515-1	59.7373A	59A	59.7373	22.1223	81.8596	33.2533	115.1129	39.9492	20	2	2	4	–	8	12	1
	2019000515-2	59.6621B	59B	59.6621	22.6630	82.3251	33.2114	115.5365	39.8989	18	2	2	4	1	9	9	2
	2019000515-3	75.7994A	75A	75.7994	22.9308	98.7302	42.1944	140.9246	50.6907	145	14	14	29	3	60	85	8
	2019000515-4	75.7503B	75B	75.7503	24.0129	99.7632	42.1671	141.9303	50.6579	41	4	4	8	2	18	23	6
	2019000515-5	84.8005	84	84.8005	22.7623	107.5628	47.2050	154.7678	56.7102	41	4	4	8	1	17	24	–
	합 계									265	26	26	53	7	112	153	17

- ■ 주택형 표시안내

공고상(청약시) 주택형	59.7373A	59.6621B	75.7994A	75.7503B	84.8005
약식표기	59A	59B	75A	75B	84

※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,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평형 환산 방법 : 공급면적(㎡)×0.3025 또는 공급면적(㎡)÷3.3058
※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※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화성시청역 2블록 서희스타힐스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,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2009.04.01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(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)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.

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[발코니 확장금액 별도]

(단위 : ㎡, 원)

타입	동별(라인별)	공급 세대수	층 구분	해당 세대수	분양가격			계약금(10%)		중도금(60%)						잔 금(30%)
					대지비	건축비	계	1차 계약시	2차 계약후 15일 이내	1회 (10%) 2019.10.30	2회 (10%) 2020.3.30	3회 (10%) 2020.8.30	4회 (10%) 2021.1.30	5회 (10%) 2021.6.30	6회 (10%) 2021.11.30	입주지정일
59A	208동 1~3,5호라인 209동 1호라인	20	1층	–	55,298,000	168,702,000	224,000,000	10,000,000	12,400,000	22,400,000	22,400,000	22,400,000	22,400,000	22,400,000	22,400,000	67,200,000
			2층	2	55,298,000	173,702,000	229,000,000	10,000,000	12,900,000	22,900,000	22,900,000	22,900,000	22,900,000	22,900,000	22,900,000	68,700,000
			3층	1	55,298,000	178,702,000	234,000,000	10,000,000	13,400,000	23,400,000	23,400,000	23,400,000	23,400,000	23,400,000	23,400,000	70,200,000
			4층	2	55,298,000	183,702,000	239,000,000	10,000,000	13,900,000	23,900,000	23,900,000	23,900,000	23,900,000	23,900,000	23,900,000	71,700,000
			5~7층	1	55,298,000	188,702,000	244,000,000	10,000,000	14,400,000	24,400,000	24,400,000	24,400,000	24,400,000	24,400,000	24,400,000	73,200,000
			8~13층	3	55,298,000	193,702,000	249,000,000	10,000,000	14,900,000	24,900,000	24,900,000	24,900,000	24,900,000	24,900,000	24,900,000	74,700,000
			14~19층	9	55,298,000	198,702,000	254,000,000	10,000,000	15,400,000	25,400,000	25,400,000	25,400,000	25,400,000	25,400,000	25,400,000	76,200,000
			20층이상	2	55,298,000	203,702,000	259,000,000	10,000,000	15,900,000	25,900,000	25,900,000	25,900,000	25,900,000	25,900,000	25,900,000	77,700,000

- ■ 감리자 및 감리금액

(단위 : 원/부가가치세 포함)

구 분	건축/토목/기계	전기	소방 / 통신
회사명	㈜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	㈜한국전설엔지니어링	미래설비엔지니어링(주) / ㈜디에이치기술단
감리금액	2,835,869,000	691,720,000	440,000,000 / 123,200,000

※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.

- ■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

구 분	사업주체	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	자금관리자
상 호	화성시청역 2블록 지역주택조합	㈜서희건설	코리아신탁(주)
주 소	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72-17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4, 4층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, 10층(해성2빌딩 10층)
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214-82-69389	110111-0335912 (220-81-19330)	110111-2937831

※ ㈜서희건설은 시공사이며, 주택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화성시청역 2블럭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표기되었음.

견본주택 안내

화성시청역 2블록 서희스타힐스 현장 및 견본주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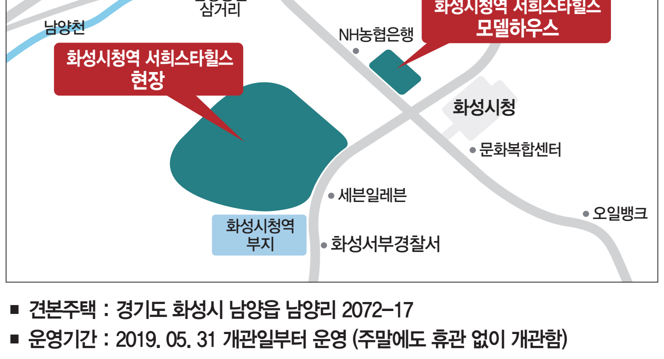

- ■ 견본주택 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72-17
- ■ 운영기간 : 2019. 05. 31 개관일부터 운영 (주말에도 휴관 없이 개관함)
- ■ 운영시간 : 10:00 ~ 18:00
- ■ 기타
  현 장 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67-15번지 일원

홈페이지

http://화성시청역서희스타힐스.com

분양문의

1599-4282

※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,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.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(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).

※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